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,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 완화(안 제5조제2항)
 -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 →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의 구체화(안 제12조제1항)
 - 예산편성 전 →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전
- 행정재산 수익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(안 제20조제2항)
 - 「외국인토지법 시행령」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
-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갱신 기준 신설(안 제22조의2)
 - 위탁관리를 2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결정함.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(안 제28조제3항제1호)
 -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
 -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인 경우
-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분납이자 조정(안 제35조제2항, 제63조제1항)
 - 분할납부 기준 50만원 → 100만원으로 상향
 - 분납이자율 6% → 3% 인하
- 매각대금 분납이자 조정(안 제38조제1항~제3항 및 제5항)
 - 분납이자율 4~6% → 3% 인하
-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기준 신설(안 제38조의2)
 - 영 제45조제1항에 해당 : 이자 3%(기간 10년)
 -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 : 이자 3%(기간 20년)
-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기준 신설(안 제63조의2)
 - 가산이자 3%
-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(안 제40조제1항제4호)
 - 행정안전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
 - '89.1.24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·공유재산 바닥면적의 2배 매각
 - '03.12.31 이전으로 변경(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,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에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으로 변경 했으며, 안 제12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전으로,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을, 안 제22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갱신 기준 신설을, 안 제28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, 안 제35조제2항과 제63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분납이자 조정을, 안 제38조제1항 ~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매각대금 분납이자 조정을, 안 제38조의2에서는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기준 신설을, 안 제63조의2에서는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기준 신설을,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기준 완화에 따른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,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